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 회)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최교진 (교육부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 등을 위해 국립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개정(법률 제21352호, 2026. 2. 19., 공포)되어 시행 예정임에 따라 시행령을 법률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병원장 추천 서류 등의 제출처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변경

-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던 병원장 추천 서류(안 제8조), 출연금 및 보조금 신청 서류(안 제10조, 안 제11조)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나. 하부조직의 구성을 정관에 위임(안 제5조)

- 현재 원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으로 ‘진료처·관리부·기획조정실 및 교육연구실’을 두고, 정관에 따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어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조직을 구성·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그 밖의 조직을 정관에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6. 4. 00. ~ 5.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그”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4조(하부조직)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처·부 및 실 의 업무분장과 그 하부조직의 구성 및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③ ----- ----- <u>그 밖에</u> ----- ----- -----.
제6조(감사의 직무) ① (생략)	제6조(감사의 직무) ① (현행과 같 음)
② 감사는 감사결과 부정·불비 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이사회와 <u>교육 부장관</u> 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 ----- ----- <u>보건 복지부장관</u> -----.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생략)	제8조(대학치과병원장의 추천)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 장”이라 한다)으로 추천받은 사 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 회에 제출해야 하며, 이사장은 이를 <u>교육부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 ----- ----- ----- ----- ---- <u>보건복지부장관</u> ----- ----.
1.·2. (생략)	1.·2.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	제10조(출연금의 요구 및 교부신

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출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생략)

② 교육부장관은 출연금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출연금을 교부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연금교부신청서에 해당 연도의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경우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치의학계 교육 및 연구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비의 운영을 위한 보조금 및 차관의 원리금 상환을 위한 보조금으로 구분한 보조금 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 교육부

청) ① -----

---- 보건복지부장관-----
-----.

1. ~ 3. (현행과 같음)

② 보건복지부장관-----

-----.

③ -----

---- 보건복지부장관-----
-----.

제11조(보조금의 요구 및 교부신청) ① -----

----- 보건복

<u>장관</u> 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u>지부장관</u>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교육부 의대혁신지원과	
연 락 처	(044) 203 - 6945